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30일, 김준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
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준혁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자는 교직원 또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학교의 전문적인 판

단을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그러나 보호자가 현행법상 의무 및 권리와 책임을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특히, 현재 교육부는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센터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우며 지역별 여건에 따른 격차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학부모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부모 등 보호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

고, 보호자의 의무 이행 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신정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2664호)과 박성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61호)에서도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각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①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김준혁의원안은 보호자의 의무 등을 규정한 현행법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중 제1절 학생에 제18조의7 및 제18조의8로 신설하고 있으나, 신정훈·박성훈의원안은 모두 제4장 학교 중 제1절 통칙에 제28조의3으로 신설하고 있으며, 신정훈의원안은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중 제1절 학생에서 제18조의5(현행 제18조의6)¹⁾에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함.

② 각 개정안은 모두 보호자가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 교육 활동에 원활히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실시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정훈·박성훈의원안은 교육에 필요한 시책으로 한정하면서,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④ 김준혁·신정훈의원안은 시책 수립·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

1) 신정훈의원안(제2202664호)은 2024. 8. 8. 발의된 것으로, 개정 조문 중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는 2025년 4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26.3.1.부터 제18조의5에서 제18조의6으로 이동됨(법률 제20862호, 2025. 4. 1. 개정, 2026.3.1. 시행)

우 교육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정훈의 원안은 보호자의 의무 등의 이행에 관한 점검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⑤ 각 개정안은 모두 시책 수립·시행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⑥ 학부 모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은 김준혁의원안에서만 규정하고 있음.

⑦ 각 개정안은 모두 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⑧ 하위 규정 개정 등을 고려하여 6개월 경과한 날 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⑨ 김준혁의원안은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33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

이와 같이 각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조문위치, 시책과 실태조사의 내용, 학부모지원센터 규정 여부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일한 기준 마련을 위해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훈의원, 신정훈의원, 백승아의원, 김준혁의원, 정성국의원, 정을호의원, 진선미의원, 서영교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 음